

의안번호	제 100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3월 8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001
----------	------

제출연월일 : 2022년 3월 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매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한국콜마)이 분양토지 포기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내실 있는 의료 연구개발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과 도내 콘텐츠 전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2024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4-2번지
- 매입시기 : 2022. 2. ~ 12.
- 매입규모 : 6,626.3㎡
- 사 업 비 : 778,171천원
 - 토지매입비 : 777,171천원
 - 등기이전수수료 등 : 1,000천원
- 매입목적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한국콜마)이 분양토지 포기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취득하여 재분양 하고자 함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4.
- 신축규모 : 부지 3,185㎡, 건물연면적 3,960㎡(지하 1층, 지상 5층)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 48, 도비 72)
 - 건축비 86억원, 부지매입비 23억원, 장비·용역비 11억원
- 주요시설 : 기업입주공간, 전시·네트워크실, 지원프로그램운영실 등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4건	9,811.3	3,076,741				
	건물	1건	3,960	8,600,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4-2	6,626.3	777,171	2022	분양포기에 따른 매입 후 재분양	한국콜마(주)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3번지	1,295	934,990	2022~2024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충북 개발공사	매입
	토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4번지	945	682,290	2022~2024	"	"	매입
	토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5번지	945	682,290	2022~2024	"	"	매입
	건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3번지 일원	3,960	8,600,000	2022~2024	"	-	신축
3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